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26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, 서울교통공사를 설립·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과,
- 다. 우리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물류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1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(출자기관) : **서울교통공사**

나. 주요 출자사업(전체 사업현황 및 예산내역 **[붙임]** 참조)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
-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
-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
-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(1역사 1동선 구축 관련)
- 생활물류지원센터(지하철역) 조성

3. 참고사항

가. 기관현황

기 관 현 황

- ▶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▶ 설립목적 : 지하철(1~8호선) 건설·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
- ▶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▶ 조직현황('21. 5월 기준)
 - 본 사 : 사장, 감사, 6본부, 6실, 42처
 - 현 업 : 1부문, 2원, 1단, 10센터, 59사업소
- ▶ 인력현황('21. 5월 기준) : 정원 16,523명 / 현원 16,807명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다. 예산조치 :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※ 작성자 :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송창환(☎2133-4335)

물류정책과 물류정책팀 박민철(☎2133-4074)

붙임 :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출자사업 현황 1부. 끝.

붙임	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출자사업 현황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'22년도 출자사업 현황 : 12개 사업, 316,955,451천원*

※ 사업개수 및 사업별 예산액은 예산편성·심의 과정에서 변동 可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출자액(안)	비고
계		316,955,451	
도 시 철 도 과	소계	316,555,451	
	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39,769,000	- 국비매칭
	지하역사 공기질 개선	88,575,400	- 국비매칭
	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	41,200,000	- 국비매칭
	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	15,264,000	
	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	29,370,000	- 2030비전 관련
	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11,955,051	- 1역사 1동선 확보 관련
	지하철 통합 교통정보 표출 시스템 구축	1,313,000	- 2030비전 관련
	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72,385,000	
	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	4,194,000	
	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	10,505,000	
	지하철역 화장실 확충	2,025,000	
물 류 정 책 과	소계	400,000	
	생활물류지원센터(지하철역) 조성	400,000	- 2030비전 관련